

**「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<u>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</u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<u>2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<u>5억원</u> 이내로 배정한다.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<u>2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<u>25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<b>최종 배정월</b>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<u>25%</u>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<u>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</u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<u>50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<u>10억원</u> 이내로 배정한다.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<u>50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<u>50%</u>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<b>경우</b>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<u>50%</u>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별지원한도 지원기간 연장</li> <li>- 특별지원한도 지원비율 상향 조정</li> <li>- 지원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업체당 배정한도를 상향 조정</li> <li>- 지원비율 변경 반영</li> <li>- 지원비율 변경 반영</li> <li>- 조문 명확화</li> <li>- 지원비율 변경 반영</li> </ul>
<p align="center">&lt; 신 설 &gt;</p>	<p align="center"><b>부 칙 (2019. 8. )</b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(2019년 11월 한도 배정 시) 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칙 신설</li> <li>- 시행일 명시</li> <li>- 경과 조치 마련</li> </ul>